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07 호 2014. 9. 16(화)

## 훈 령

남해군 훈령 제289호 남해군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 ..... 1

## 고 시

제2014 - 63호 남해군계획시설(도로:농어촌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  
제2014 - 64호 남해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운영계획 고시 ..... 4

## 공 고

제2014 - 555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14 - 556호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14 - 566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 20  
제2014 - 576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 22  
제2014 - 579호 임도신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5  
제2014 - 580호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제2014 - 588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제2014 - 591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 : 봉황산)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 34  
제2014 - 592호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38  
제2014 - 597호 공시송달 공고 ..... 43  
제2014 - 603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5  
제2014 - 607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공고 ..... 49  
제2014 - 618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4, 행정 3044)



훈 령

「남해군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 8. 29.

남 해 군 수

남해군 훈령 제289호

남해군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

남해군인사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4 - 63호

남해군계획시설(도로:농어촌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변경) 공고(남해군 공고 제2014-368호, 2014.05.23.)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생태도시과,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 1.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남해읍 차산리, 이동면 신전리, 창선면 수산리, 서면 노구리 일원
- 2. 면 적 : 21,334㎡
- 3. 남해군계획시설(도로:농어촌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 남해군계획시설(도로:농어촌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I.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	1,474	21,334	-	-	-	4	1,054	17,194	2	420	4,140
소로	6	1,474	21,334	-	-	-	4	1,054	17,194	2	420	4,140

2) 도로 결정(변경)조서

1)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23	8	국지 도로	260	설천면 비란리 1117	설천면비란리 15-54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설천101호선) (교량 : 75m)
신설	소로	2	124	8	국지 도로	417	소로2-72	남해읍 차산리 463-23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남해101호선)
신설	소로	2	125	8	국지 도로	162	이동면 신전리 산116-38	이동면 신전리 산107-2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이동215호선)
신설	소로	2	126	8	국지 도로	215	남해읍 차산리 759-5	남해읍 차산리 705-3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남해206호선)
신설	소로	3	15	6	국지 도로	280	창선면 수산리 283-10	창선면 수산리 497-38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창선201호선)
신설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40	서면 노구리 산50-4	서면 노구리 산55-7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서면301호선)

2)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23	• 노선신설 B=8m, L=260m 교량구간 : B=8m, L=75m 도로구간 : B=8m, L=185m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설천101호선(도마~비란) 개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	소로2-124	• 노선신설 B=8m, L=417m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남해101호선(선소~심천) 개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	소로2-125	• 노선신설 B=8m, L=162m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이동215호선(금평~북곡) 개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	소로2-126	• 노선신설 B=8m, L=215m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남해206호선(곡내선) 개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	소로3-15	• 노선신설 B=6m, L=280m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창선201호선 개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	소로3-16	• 노선신설 B=6m, L=140m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서면301호선 개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14 - 64호

## 남해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운영계획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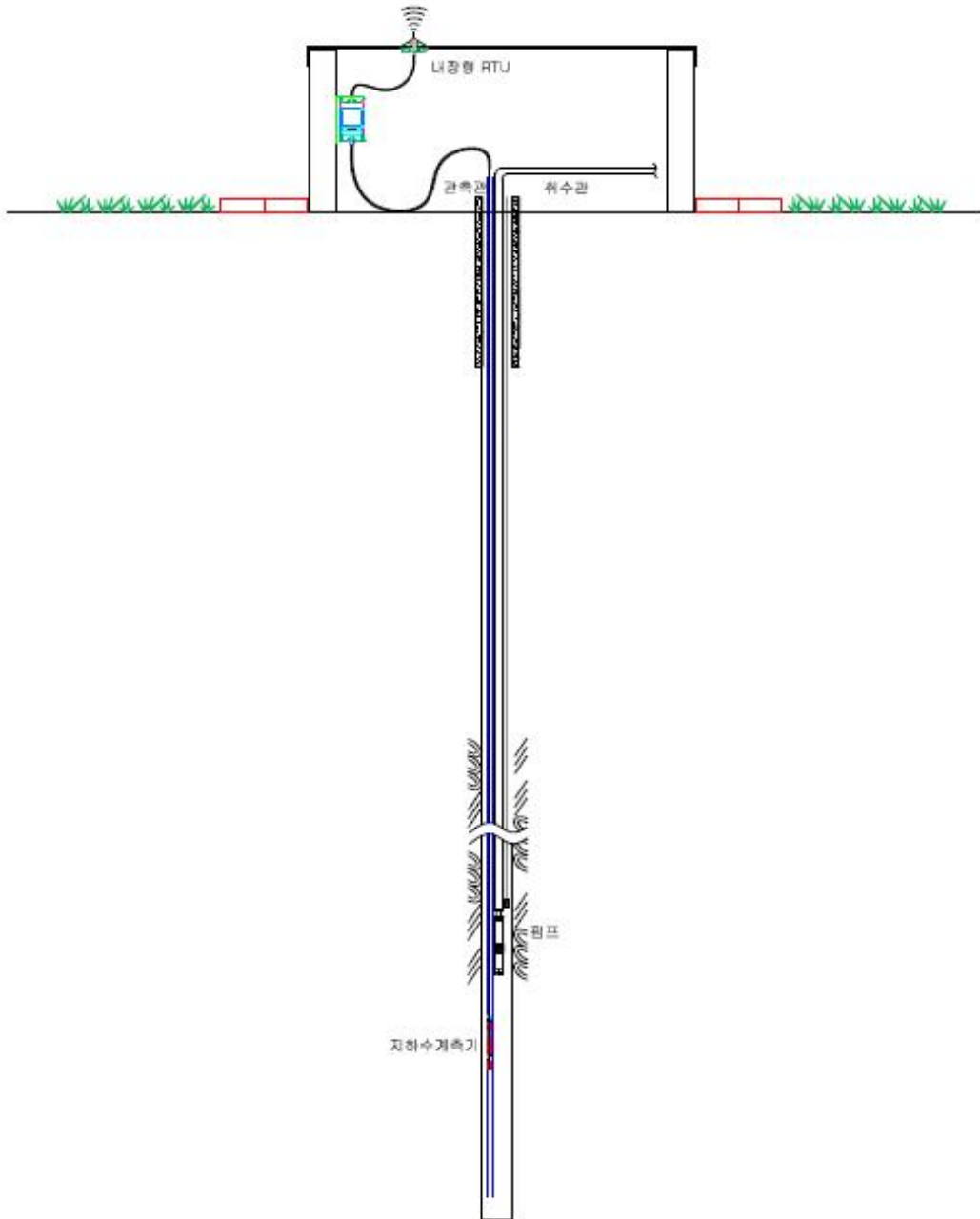
남해군 관내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을 위하여 남해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및 운영계획을 「지하수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 남 해 군 수

1. 설치목적 :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관측 관리
2. 설치위치 : 10개소
  - 가.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42-1
  - 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87-4
  - 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06-1
  - 라.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6-7
  - 마.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970-5
  - 바.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30
  - 사.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609
  - 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424
  - 자.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836-3
  - 차.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156-1
3. 측정방법 : 무선통신에 의한 자동측정
4. 측정항목
  - 가. 수위 : 지하수의 수위 변동사항 파악
  - 나. 수온 : 지하수의 수온 변동현황 파악
  - 다. 전기전도도 : 지하수의 수질 변동사항 파악

5. 설치 구조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4 - 555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정비·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협력사업비 평가 및 공개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1항, 2항)
- 금고심의위원회의 의결 조문 보완 (안 제4조 4항)
-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조문 보완 (안 제10조 4항)

4. 제(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055-860-3182, 팩스860-3705, e-mail : apple720@korea.kr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제4조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금고심의위원회의 구성)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금고운용 및 보고)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2(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lt;신 설&gt;</u></p>	<p><u>제2조의2(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 ①</u>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u>②</u> 제1항의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현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p>
<p><u>제4조(금고심의위원회의 구성)①~③ 생략</u> <u>④&lt;신 설&gt;</u></p>	<p><u>제4조(금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③</u> (현행과 같음)</p> <p><u>④</u>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제10조(금고 운용 및 보고)①~③ 생략</u> <u>④&lt;신 설&gt;</u></p>	<p><u>제10조(금고 운용 및 보고) ①~③</u> (현행과 같음)</p> <p><u>④</u>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남해군 공고 제2014 - 556호

##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5.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을 보호하고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 ~ 제3조)
- 나. 현장의 내용, 실천을 위한 조치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규제개선 및 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안 제6조 ~ 제7조)
- 라.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조사, 이행실태 평가 및 우대조치(안 제8조 ~ 제10조)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규제개혁추진단(전화 055-860-3245, 팩스  
055-860-370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규제개혁추진단(055-860-32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안 1부. 끝.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신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규제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차별받은 경우의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내용)** 현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현장의 실천)** ① 전 공무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개선 신고 처리)** 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개선 의견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2

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 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신고 고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 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내용은 현장 이행정도, 요청사항의 개선정도,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현장 이행실태 평가는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단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남해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안

우리 남해군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 규제개선 신고서

문 1) 경험하신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Empty box for writing specific regulatory burdens]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Empty box for writing improvement suggestions]

Q 1) 작성자 : \_\_\_\_\_ Q 2) 기업명 : \_\_\_\_\_ Q 3) 관련기관 : \_\_\_\_\_

Q 4) 전화번호 : \_\_\_\_\_ Q 5) 휴대폰 : \_\_\_\_\_ Q 6) 이메일 : \_\_\_\_\_

Q 7) 공개여부 : \_\_\_\_\_ (공개허용시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 네이버 규제in 지식 공유 서비스에 등록)

[별지 제2호서식]

# 검 토 의 견 서

지 자 체 과제번호		옴부즈만 등록번호		
①건의기관		②민원인(연락처)		
③소관부서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⑤제목				
⑥건의내용	<p>&lt;제 도 현 황&gt;</p> <p>○</p> <p>-</p> <p>○</p>			
	<p>&lt;건의 주요 내용&gt;</p> <p>○</p> <p>○</p>			
⑦관련 제도 내용				
⑧부서의견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불가			
	○			
⑨유사사례	○			
⑩추진일정	○ ○			



[별지 제4호서식]

# 규제 신고고객 보호위반 신고

지 자 체 과제 번호		옴부즈만 등록번호	
① 규제 신고 고객 및 연락처		②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③ 제목 및 접수일	(    년    월    일 )		
④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input type="checkbox"/>  <조치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⑤ 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input type="checkbox"/>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⑦ 기타			



남해군 공고 제2014 - 566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남해군 고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합니다.

2014. 9. 1.

### 남 해 군 수

- 1. 공공하수도 명칭 : 남해군 고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 2. 사용개시일 : 2014년 9월 1일
- 3. 하수처리구역
  - 편입지역 : 11개마을(남해군 고현면 오곡, 관당, 포상, 선원, 천동, 북남치, 동남치, 대사, 탑동, 중앙, 방월)
  - 편입면적 : 1.056km<sup>2</sup>
  - 관로연장 : 20.798km

4.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668번지

5. 설계수질 및 설계 유입 용량

○ 설계수질 (단위:mg/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질	206.0	172.0	252.0	47.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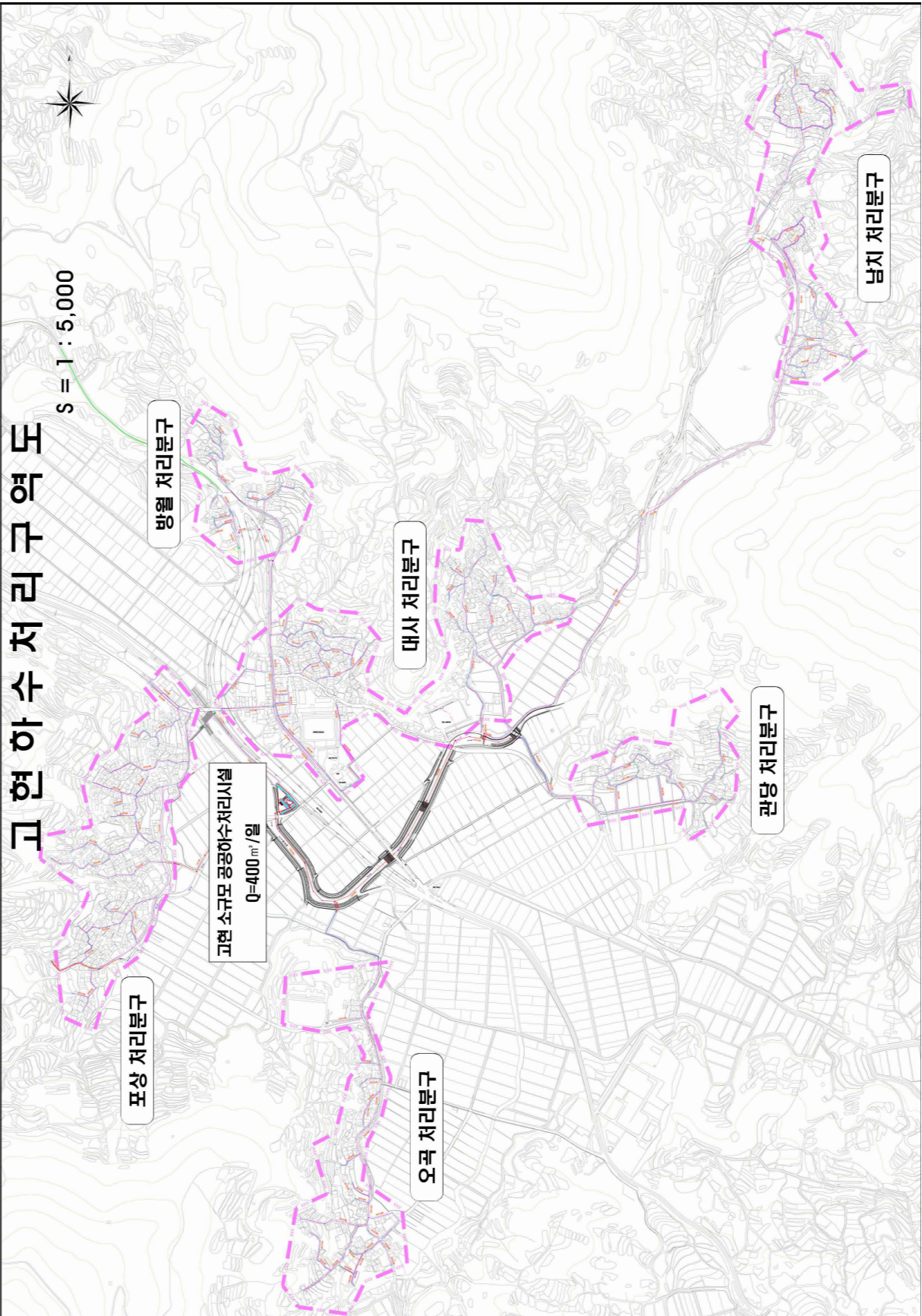
○ 설계 유입 용량 : 400m<sup>3</sup>/일

6.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7. 관련도면 열람 : 실음생략

○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환경수도과 하수정화팀 (☎055-860-3333)



남해군 공고 제2014 - 576호

###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계획시설사업 도로(소로2-18호, 북림교회~유림정)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4. 8. 28.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
  - 명칭 : 남해군계획시설사업 도로(소로2-18호, 북림교회~유림정)
2. 사업자 : 남해군수
3. 위치 : 경남 남해군 북변리 278-7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도로개설 L = 247m, B = 8m
5. 공고기간 : 2014. 8. 28. ~ 2014. 9. 11.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남해군청 생태도시과 **☎ 055-860-3414**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붙임]

토지조서

일련 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공부	실 제	공부	편입					
1	남해읍 북변리	300-40	도로	도로	13	13	강복금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00-11			
2	남해읍 북변리	300-42	도로	도로	3	3					
3	남해읍 북변리	300-37	대	대	62	62	하재옥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00-11			

물건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당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북변리	300-37	주택	블록/슬 라브	37.8m <sup>2</sup>	남해읍 북변리 300-11	하재옥			
			주택	블록/슬 라브	82.87m <sup>2</sup>					
			창고	블록/슬 라브	2.64m <sup>2</sup>					
			담장	블록	53.12m <sup>2</sup>					
			계단	블록	4.05식					
			마당	콘크리트	20.9m <sup>2</sup>					
			마당	잔디	80.92m <sup>2</sup>					
			가추	스레트	3.00m <sup>2</sup>					
			대문	철재 (1.7×1.9)	1식					
			물탱크	-	2식					
전기	-	2식								

연 번	소재지	지번 (당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1	남해읍 북변리	300-37	기름 보일러	-	2식	남해읍 북변리 300-11	하재옥			
			수도	-	1식					
			정화조	-	1식					
			화단	-	7식					
			건사	블록 (1×1.5)	1식					
			에어컨		3대					
			종려나무	H3	1주					
			목서	R20	1주					
			명자나무	-	1군					
			골담초	-	5주					
			아왜나무	R1	2주					
			천리향	-	1주					
			동백	R3	1주					
			철쭉	-	1주					
			수국	-	1주					
			무화과	R6	1주					
			치자	-	2주					
팔손이	R5	1주								
라일락	-	2주								

남해군 공고 제2014-579호

## 임도신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임도신설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주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28일

남 해 군



- 1. 사업명 : 2014년 임도신설사업(창선 서대지구)
- 2. 사업내용 : 임도신설 2.24km
- 3.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04월
- 4. 편입대상지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임				6명	
창선	광천	산28	임	49,488	3,486	경남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751	이두선	
창선	광천	산27	임	88,661	2,061	경남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726	임세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118	서덕모	
창선	서대	산127-3	임	4,959	607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61	김두성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284	김완수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91	김준수	

- 5. 공고기간 : 2014년 8월 29일 ~ 09월 17일
- 6. 의견수렴기간 : 공고기간내
- 7. 유의사항
  - 본 토지의 이해관계인은 동의여부를 공고 기간내에 제시해야 하며, 위 기간내 제시하지 않을 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 농정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860-3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4 - 580호

##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8.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차장조례

#### 2. 개정이유

- 「남해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2조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용 규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조항은 2009. 7. 7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조항 삭제(안 제4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면리 24-1)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전화 055-860-3453팩스 055-860-370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860-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  <u>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  여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lt;삭제&gt;</p>

남해군 공고 제2014 - 588호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가. 참전 명예수당의 도내 10개 군지역의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7~10만원으로 인상하였거나 금년 내 인상계획인 군이 6개 지역으로 파악되어 우리군의 지급액(5만원)이 도내 최저수준으로서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상이 필요한 실정임
- 나. 지급일을 현행 「매분기 다음달 20일」을 「매월 20」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

#### 3. 주요내용

- 가. 참전 명예수당을 월5만원→월7만원으로 인상(제4조 제1호)
- 나. 지급일을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1호)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055-860-3806, 팩스 055-860-38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055-860-3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참전 명예수당 : 월7만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 ①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7조 ①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지원사업) (생략)</b></p> <p>1. 참전 명예수당 : 월 5만원</p> <p>2. (생략)</p> <p>3. (생략)</p>		<p><b>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b></p> <p><u>1. 참전 명예수당 : 월 7만원</u></p> <p>2. (생략)</p> <p>3. (생략)</p>		
<p><b>제7조(수당의 지급)</b></p> <p>① 참전 명예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되, 수당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b>제7조(수당의 지급)</b></p> <p>① 참전 명예수당은 <u>매월 20일에</u> 지급하되, 수당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남해군 공고 제2014 - 591호

###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 : 봉황산)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공고 제2014-464( '14.7.3.)호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된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 : 봉황산)사업에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군 생태도시과 도시계획팀(☎055-860-3416), 농정산림과 푸른남해팀(☎055-860-3992)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4. 9. 3.

### 남 해 군 수

1.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공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사업(2차분)	남해읍 북변리 봉황산 일원	16,087㎡	2,500	

2. 사업시행자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서변리 24-1번지)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기간(변경)

	기존	변경	변경사유	비고
착수예정일	'14.5월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예정일 변경	
준공예정일	'14.12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1 >

□ 사업명 : 봉황산 나래숲 조성사업 (2차분)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총 합 계				139,979	16,087				
1	남해읍 아산리	238	전	813	133		남해군		
2	남해읍 아산리	239	전	1,250	1,223		남해군		
3	남해읍 아산리	240-2	전	1	1		남해군		
4	남해읍 아산리	240-3	전	40	40		남해군		
5	남해읍 아산리	244-1	전	47	47		남해군		
6	남해읍 아산리	246-1	전	155	155		남해군		
7	남해읍 아산리	247	전	421	421		남해군		
8	남해읍 아산리	248-1	전	922	688		남해군		
9	남해읍 아산리	248-2	전	403	382		남해군		
10	남해읍 아산리	248-3	전	1,666	192		남해군		
11	남해읍 아산리	248-4	전	483	364		남해군		
12	남해읍 아산리	249	전	185	185		남해군		
13	남해읍 아산리	산143-1	임야	15,174	522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07번길 19-2(상대동)	한재성		10,622 / 15,174
							남해군		4,552 / 15,174
14	남해읍 북변리	607-8	종교 용지	10	10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36) 제 507 호

2014년 9월 16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5	남해읍 북변리	611-1	전	392	11		남해군		
16	남해읍 북변리	611-5	전	841	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21-5	안상진		
17	남해읍 북변리	산10-3	임야	27,570	2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89-1 4층	송혜원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가길 4-9	고대호		1/2
18	남해읍 아산리	301-1	전	185	129		남해군		
19	남해읍 아산리	301-2	전	539	355		남해군		
20	남해읍 아산리	301-3	전	572	454		남해군		
21	남해읍 아산리	301-6	전	740	454	남해읍 아산리 896	장봉민		
22	남해읍 아산리	301-7	전	641	495		남해군		
23	남해읍 아산리	301-8	전	1,464	1,349		남해군		
24	남해읍 아산리	302	전	803	757		남해군		
25	남해읍 아산리	303	전	443	362		남해군		
26	남해읍 아산리	304	전	390	361		남해군		
27	남해읍 아산리	304-1	전	413	413		남해군		
28	남해읍 아산리	304-2	전	374	254		남해군		
29	남해읍 아산리	304-3	전	483	75		남해군		
30	남해읍 아산리	304-4	전	740	1		남해군		
31	남해읍 북변리	305	전	483	467		남해군		
32	남해읍 북변리	306	대지	374	347		남해군		
33	남해읍 북변리	307	대지	255	235		남해군		
34	남해읍 북변리	308-1	전	738	462		남해군		
35	남해읍 북변리	309-3	전	1,533	358		남해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36	남해읍 북변리	981-1	전	400	225		남해군		
37	남해읍 북변리	982-1	전	760	441		남해군		
38	남해읍 북변리	산132	임야	28,660	1,902		이경찬외 7명		
39	남해읍 북변리	산133-1	임야	15,954	987		남해군		
40	남해읍 북변리	산133-9	임야	298	252		남해군		
41	남해읍 북변리	산 133-15	임야	1,862	18		남해군		
42	남해읍 북변리	신134-2	임야	89	89		남해군		
43	남해읍 북변리	신138-2	임야	992	29		남해군		
44	남해읍 북변리	산144-5	임야	29,421	2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 로 816, 501동 603호 (시흥동, 벽산아파트)	황은홍		20595 / 29421
							남해군		8826 / 29421

남해군 공고 제2014 - 592호

##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4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2. 제정이유

남해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배차범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차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배차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배차허용범위에 대한 세부적 조항개설(제4조)
- 나. 배차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다. 보상청구권의 배제 내용 명시(제10조)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055-860-3154, 팩스860-3705, e-mail : thetraum@korea.kr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안) 1부.

남해군 규칙 호

###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안)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배차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목적”이란 제4조의 배차범위에 속하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소관부서”란 공익목적과 관련 있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5조의 이용신청 및 제7조의 배차승인으로 공용차량을 지원받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배차관리)** 군수는 업무소관부서의 관계 규칙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목적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배차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배차범위)** 공익목적의 공용차량 배차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 나.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 다.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그 밖에 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은 인사·단체 등이 군을 방문하는 경우
5. 군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배차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배차를 제한한다.

1. 정당의 정치적 행사 참여 목적일 경우
2. 단순한 관광성 여행 등으로 판단 될 경우
3. 차량의 임차료 등 소요경비를 군에서 지원받은 경우
4. 군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5. 기타 군수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6조(이용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7조(배차신청)** 업무소관부서는 제6조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해당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는 제7조의 배차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제7조에 따라 배차된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업무소관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10조(보상청구권의 배제)** 이용자는 전원 보험(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사용 중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로 군수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준용규정)** 남해군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및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4 - 59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남해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상주지구단위계획도로(소로2-8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코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미등기 및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송부 불가 및 우편물 반송이 되었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 내 협의가 없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 신청할 예정이오니 소유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3.

###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주지구단위계획도로(소로2-8호)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97m, B=8m, 교량설치 1식

**2. 공고내용** :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4. 9. 3 ~ 2014. 9. 17(15일간)

**4. 공고장소** : 남해군청 게시관 및 남해군 상주면사무소 게시관

**5.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면리	지번				주 소 (등기부상)	성 명	
1	상주 상주	1076-1	도	123	12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94	김 비 동	
2	상주 상주	1080	답	45	45	미등기	김 은 조	
3	상주 상주	1080-1	도	87	87			
4	상주 상주	1093-6	도	50	5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97	차 미 선	
5	상주 상주	1095-9	도	36	36	부산 동구 초량동 998-388 마 마이파트 408호	김 동 순	

**6. 협의방법 및 절차**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생태도시과 사무실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통장사본 1통, 인감도장 지참(인감증명서 사용할 경우)
-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와 직접협의
- 보상금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7.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생태도시과 도시계획팀(☎055-860-3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4 - 603호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1.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브랜드 사용기간을 매년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용 신청 시 대부분 읍·면장, 농협장 등 농·수·축·임산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는 등 추천서의 실효성이 없어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삭제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정
- 다. 안 제3조제의 첨부서류 중 “추천서” 삭제에 따라 “추천”을 삭제하고 공신력(公信力)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으로 수정
- 라.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신청 시 매년 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1년”을 “2년”으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09.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농정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번지  
남해군청 농정산림과(전화 055-860-3913, 팩스 055-860-39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정산림과 유통지원팀(055-860-3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남해군 규칙 제2014 - 호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군수 또는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 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 으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1년” 을 “2년” 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사용신청)</b>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b>추천서(별지 제3호서식)</b>,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b>농산물품질관리법</b>에 따라 유기채배 또는 무농약 채배로 인증 받은 것(친환경 농산물에 사용권을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2. 「식품산업진흥법」 및 <b>「수산물품질관리법」</b>에 따른 전통식품이나 품질인증(지역명품 또는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에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3. 품질이 우수하여 <b>군수 또는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b>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b>제3조(사용신청)</b> ----- ----- ----- ----- ----- ----- ----- ----- ----- ----- ----- ----- ----- ----- ----- -----</p> <p>1. <b>농수산물품질관리법</b>----- ----- ----- ----- ----- ----- ----- ----- -----</p> <p>2. ----- <b>「농수산물품질관리법」</b>----- ----- ----- ----- ----- ----- ----- -----</p> <p>3. ----- <b>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b>----- ----- -----</p>
<p><b>제9조(사용기간 등)</b>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증인서를 받은 날부터 <b>1년</b>으로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b>1년</b>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9조(사용기간 등)</b> ①----- ----- ----- ----- ----- ----- ----- ----- ----- ----- ----- ----- ----- ----- ----- -----</p> <p>②----- ----- ----- ----- ----- ----- ----- ----- ----- ----- ----- ----- ----- ----- ----- -----</p>
<p><b>【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b></p>	<p><b>【별지 제3호서식】 &lt;삭 제&gt;</b></p>

남해군 공고 제2014 - 607호

##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공고

유해성 적조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태세 확립과 적조피해 발생전 해상가두리시설 안전지대 이동을 통한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하여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남 해 군 수**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현황>

지정목적	면적 (ha)	지정기간	위치	좌표(WGS) 및 구역 (위도,경도)	지정받은자
적조발생시 해상가두리 시설 대피장	4	2014.9.12 ~ 2014.10.1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해상	남해양식 제199호 가.34-41-30.66, 128-06-36.78 나.34-41-30.66, 128-06-52.49 다.34-41-20.93, 128-06-52.49 라.34-41-20.93, 128-06-36.78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구역】	남해군수 (해양수산과장)

붙 임 : 대피장 지정 해역도 1부

(해상가두리 적조대피장 해역도)



상기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수역

구분	경위도(WGS)		기점간 거리(m)		비 고
	위도(N)	경도(E)	기점(구간)	거리(m)	
가	34-41-30.66	128-06-36.78	가-나	400	
나	34-41-30.66	128-06-52.49	나-다	300	
다	34-41-20.93	128-06-52.49	다-라	400	
라	34-41-20.93	128-06-36.78	라-가	300	

남해군 공고 제2014 - 618호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5.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완화
- 나. 운영시간 및 휴무 조정
- 다.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 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10%공제 후 반환 → 전액 반환)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09.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체육시설사업소(전화 055-860-8662, 팩스 055-860-37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055-860-8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인터넷 사용신청의 경우” 를 삭제하고, 사용일 “7일” 를 사용일 “1일” 로 한다.

제9조 1항 제1호 중 “10시에 종료한다. 다만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를 “까지로 하며,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로 하고 “다만, 군수는 트랙이 설치된 공설운동장의 경우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상시 개방할 수 있다.” 는 후단을 신설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오전 9시” 를 “오전 6시” 로 하고, “오후 8시” 를 “오후 10시” 로 한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모든 체육시설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변경 고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1일전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지훈련에 한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제4호 중 “10일 이상” 을 “5일 이상” 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은 초·중·고 축구팀이 축구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할 경우

제13조 제3항과 제3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 제4항 중 “군수는 읍·면민이 행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주 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13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13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5.18 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제13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3조 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을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전액 반환”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생 략) 1.~3.(생 략) 4. 인터넷 신청의 경우 사용일 7일전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p>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삭제) ----- <b>1일</b> -----</p>
<p>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생 략)  1. 공설 운동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 장하여 오후 10시에 종료한다. 다만,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 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2. 실내수영장은 매일 오전 9시에 개 장하여 오후 8시에 종료한다. 3.(생 략) ②(생 략) ③(신 설)</p>	<p>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현행과 같음)  1. ----- ----- <b>까지로 하며 하 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 시 간은 오전 5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트랙이 설치된 공설운동장의 경우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시 상시 개방할 수 있다.</b> 2. -----<b>6시</b> -- ----- <b>10시</b>-----. 3.(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b>③ 모든 체육시설은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변경 고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b></p>
<p>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예정일7 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③(생 략) ④(신 설)</p>	<p>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현행과 같음) ② <b>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1 일전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 부하여 한다.</b>  ③(현행과 같음) <b>④ 전지훈련에 한하여 체육시설사용 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b></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생 략)</p> <p>1.~3.(생 략)</p> <p>4. <u>10일 이상</u>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축구인조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5.(신 설)</p> <p>②(생 략)</p> <p>1.~2.(생 략)</p> <p>③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p>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p> <p>4.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p> <p>④ <u>군수는 읍·면민이 행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주 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u></p> <p>1.(신 설)</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4. <u>5일 이상</u>-----</p> <p>-----</p> <p><u>5.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은 초·중·고 축구팀이 구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u></p> <p>②(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③(삭 제)</p> <p><u>1.~4.(삭 제)</u></p> <p>④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신 설)</p> <p>3.(신 설)</p> <p>4.(신 설)</p> <p>5.(신 설)</p> <p>⑤ (생 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p> <p>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p> <p>5. 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①(생략)</p> <p>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u>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u>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p> <p>2.~3. (생 략)</p> <p>③(생 략)</p>	<p>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①(현행과 같음)</p> <p>1. ----- ----- -----<u>전액</u>----- ----- -----</p> <p>2.~3.(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